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나20170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나201708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8가합3500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윤근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재욱

피고, 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정

담당변호사 이신광

변론종결 2021. 11. 10.

판결선고 2021. 12. 15.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8가합3500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D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17. 10.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7년 제92호의 공정증서에 기해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주식회사 F이 2017. 10. 25. 피고 E에 대하여 한 액면금 480,920,000원, 수취인 E,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성남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의 발행행위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주식회사 F에 각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을 모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인 2017. 10. 25.경에는 F의 Q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피고 E의 F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의 작성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25.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행위 및 2017. 10. 30.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F의 소극재산 3,554,906,728원이 적극재산 1,484,036,28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F이 피고들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채권을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를 각 적성하여 주었으므로, F의 위 각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은 원심 법원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채무자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들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은정, 판사 최항석, 판사 정경근

별지